# 행동증거분석의 법의학적 적용

####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Received: March 20, 2018 Revised: April 25, 2018 Accepted: May 16, 2018

#### **Correspondence to**

Youn Shin Kim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Chosu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61452, Korea

Tel: +82-62-230-6998 Fax: +82-62-234-4584

E-mail: ysk007fm@hotmail.com

# Forensic Application of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Youn Shin Kim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Chosu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Gwangju, Korea

Criminal profiling of violent, serial crimes plays a critical role in police work worldwide. However, its performance in Korea remains a topic of debate and has been deemed unsatisfactory; empirical studies on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murderers are extremely scarce. This work analyzes some murder or suspicious death cases using autopsy, ruling, and public media reports, where available, as well as literature reviews.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raise research interest in the field of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and encourage researchers to analyze murder cases with consideration for wound interpretation and case reconstruction. The basic concept of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is that different patterns of offending actions will reflect differences in the personality traits or motives of offenders. The analysis of offending behaviors and witness or suspect statements can be a useful investigative tool for solving violent crimes. This paper presents a description of the case history, autopsy findings, and psychological connotations for eight murder or suspicious death cases, including serial killing, in the context of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Key Words:** Criminal profiling; Motivation; Autopsy; Reconstruction; Wound interpretation

#### 서 론

어떤 국가, 어느 지역에서나 사망의 조사를 위해서는 법의학적 검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죽음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과 그해석은 사인의 분석 및 적절한 사후조치에 대한 방향과 범위를 제시해 주게 된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인간의 개성이 다변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범죄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수사기관 내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범죄분석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이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인의 규명과 그원인 손상 등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는 법의의사와의 협업이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1].

범죄인상분석(criminal profiling)이란, 범죄자가 행한 범 죄행위의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특성과 주요 성격특징 을 파악하는 기법으로 정의된다[2]. 행동증거란 어떤 행동의

발생 여부와 그 시기 및 방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는 모든 물리적 증거, 기록물, 증언 등으로 정의되며, 행동증 거분석이란 이런 다양한 물적 증거와 피해자, 현장 특징 등 을 망라하여 그것을 조사하고 해석하는 연역적 추론(ideodeductive method)을 통해 범죄현장과 범죄인상을 분석하 는 것이다[3].

범죄인상분석의 기본 전제는 한 개인이 사고하는 방식은 그의 행동에 반영된다는 것이다[2]. 죽음에 대한 법의학적 조 사과정에서, 손상을 검사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의 행동을 검사함으로써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추론을 시도 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손상분석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범죄자의 가해행동이란 결국 피해자의 신체에 드러난 범죄행동으로서의 물리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4]. 행동분석의 방법이나 절차는 경험적, 학문적으로 입증된 지식, 범죄현장의 특징 및 법의학적 소견 등의 사례 정보, 그리고 관계자 진술의 분석과 그 결과의 종합에 기초하 는 것이므로[1], 행동증거분석에의 검시전문가의 관심과 적극 적인 참여는 죽음과 손상, 현장 소견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 인 법의학적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동분석의 결과가 수사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신뢰성을 높이고, 그것이 유무죄 에 대한 법정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을만한 증거능력을 확보하 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희망한다.

이렇듯, 행동증거분석을 위한 법의학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사건의 재구성과 모든 추가적인 추론을 위한 법의학적 노력은 객관적인 기초사실에 기반할 때 더욱 정확해질 수 있다. 부검을 위해 법의의사에게 제공되는 정보 에 범죄현장의 특징과 주요 관계자의 진술까지가 포함될 필 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법의학적 소견과 그에 관한 부검감정인의 설명은 더욱 세밀해지고 정확해질 것이다. 행 동증거분석의 합리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부검감정서가 손 상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아 울러 둔기 혹은 예기 손상 등 손상의 유형과 가해 흉기의 종 류, 사전(ante-mortem) 혹은 사후(post-mortem) 여부 등 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검보고서가 손상의 상세소견과 그 양상의 해석, 가해행동들의 시간적 순 서 등, 행동분석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세밀한 정보나 만족할 만한 설명을 담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의 발생 원인 을 단지 법의감정인의 무성의나 무관심, 혹은 역량 부족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고[5],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이 노력 이 필요해진다. 여기에는 사망 현장에 대한 검시전문가의 접 근 권한과 관련자 진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포함된다. 그래야 만 죽음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부검소견을 해석하 고, 그 결과를 행동분석의 관점에서 적용함으로써, 검시소견 의 오해석을 회피하는 등 행동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1].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거나 혹은 부검실 에서 일상 업무로서 경험하였던 살인 사건 혹은 의심스러운 사망(suspicious death) 사건에 대해서, 사망의 원인, 손상의 내용과 사건의 경과, 혹은 용의자의 진술 내용 등을 행동증거 분석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법의의사의 시각과 입장에서 이 러한 분석이 시도될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미나 가치 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성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재료 및 방법

행동증거분석의 관점에서의 경험적 연구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부검기록과 판례기록, 관계자 진술 내용, 언론 보도자료 등 입수 가능한 자료를 종합하여, 8건의 사망 사건에 대한 분 석을 시도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사건들의 요점은, (1) 체포된 연쇄살인범이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서 가해 흉기와 손상의 불일치가 야기하였던 문제 상황, (2) 그 연쇄살인범의 범행으 로 확인된 주택가 살인사건에서의 가해 흉기(해머와 재크나 이프)와 그로 인한 손상의 해석 및 동일범 여부의 추정, (3) 택시기사 살해 사건에서 손상 해석과 용의자 진술의 불일치, (4) 만삭 임부 욕조 사망 사건의 사인에 대한 법의학적 의견 과 그 사인을 부인하는 용의자의 진술 주장, (5) 하천부지 공 터에서 발견된 신원 불상 탄화시체에서의 현장 소견과 자살 의 동기의 연관성 추정, (6) 시반의 위치가 의심의 단서가 된 살인사건에서의 손상의 해석과 용의자 진술의 분석, (7) 엽총 오발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의 손상의 해석과 용의자 진술 검 증을 위한 추가 심문, (8) 주차장 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의 손상의 해석과 운전자 진술 및 고의성의 입증 등이다.

부검에서 확보된 손상의 해석에 있어서 그 소견이 범죄라 고 하는 폭력적 가해 행동의 결과라는 전제하에, 부검기록과 판례기록, 관계자 진술, 언론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손상과 현장소견의 심리적 해석 및 함의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현장에 남겨진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행동과, 그에 관한 피해자, 목격자 혹은 용의자의 진술에 있어서, 사건을 재구성 하거나, 그 행위 혹은 진술의 심리적 또는 동기적 특성이 추 론 가능한 소견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행동증거분 석이 검시실무 및 강력범죄 수사실무에서 얼마만한 가치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 결 과

#### 1. 연쇄살인범의 거짓 자백과 진술 번복

어느 저녁 무렵, 서울의 한 음식점에 20대의 여성이 예리한 흉기에 찔린 채 뛰어 들어오며 살려달라고 외친 후 가게 안으 로 꼬꾸라져 사망하였다(Fig. 1). 부검결과 사인은 흉복부 자 창(stab wound)이었고(Fig. 2A), 내용적으로는 심장과 폐가 관통된 손상이었다(Fig. 2B). 손상의 해석을 통한 가해 흉기와 성상 기전의 추정에 있어, 손상의 양태에 비추어 작용 흉기는 칼등의 두께가 약 0.2 cm인 외날의 예기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뒤,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흉기를 작용시켜 손상을 야기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후일, 유00라는 연쇄살인범이 체포되면서, 이 살인이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하였다가 재판정에서 자백을 번복, 수사기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노라 진술하였다. 그의 애초 자백에 따르면, 피



Fig. 1. Position of the victim at the scene.

해자를 윤락녀로 착각하고 경찰을 사칭하며 금품을 강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길바닥에 밀쳐 쓰러 뜨리고 재크나이프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죽음을 행동증거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 해 결되어야 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범인의 자백은 재 크나이프에 의한 살인이었으나, 부검을 통해 추정되는 가해 흉기는 칼등의 두께가 0.2 cm인 예기였다. 손상 해석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범죄자의 자백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실무 상 허용될 수 있을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여겨지며, 최소한 그 진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 두 번째는, 목격자 진술 에 따르면 피해자가 뛰어 들어오며 쓰러져 사망하였다는 것 이었으나, 용의자의 진술은 길바닥에 쓰러뜨린 후 넘어진 피 해자의 가슴을 찔렀다는 것인 바, 과연 이미 쓰러져서 가슴 에, 그것도 심장과 폐에 관통 자창을 입은 피해자가 다시 일 어서서 인근 음식점 안으로 뛰어갈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세 번째는,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 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착의에 대한 검사를 통해 상의의 등쪽 에 진술과 일치하는 흔적, 예컨대 흙먼지 자국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자백 내용의 신빙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었던 터라면,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수사단 계에서의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했을 것이나, 그러한 수단에 주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흉악범의 거짓말 에 국가 공권력이 농락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Fig. 2. (A) Stab wounds on the victim's torso. The stab on the left hand is the same as that in the lower abdomen. (B) The stab on the right chest induced a fatal injury, penetrating to the heart and left lung.

### 2. 주택가 연쇄살인의 가해 흉기, 해머와 재크나이프

어느 해 9월에서 11월에 걸쳐, 서울의 신사동, 구기동, 삼성 동, 혜화동의 주택가에서 거주자인 일가족들이 둔기로 살해 된 사건이 있었다. 사망자는 모두 8명이었고, 신사동에서는 각각 70대와 60대인 부부가, 구기동에서는 80대의 노인(여) 과 50대인 여주인, 30대인 아들이, 삼성동에서는 60대 후반 인 노인(여)이, 그리고 혜화동에서는 80대인 노인(남)과 50 대인 파출부(여)가 각각 살해되었다.

부검소견에 근거할 때, 모든 사건에서 살해의 주된 흉기는 둔기였고, 둥그런 모양의 두피 열창(Fig. 3A)과 계단형의 머 리뼈 골절선(Fig. 3B), 머리뼈의 횡골절 등, 손상의 양상에 비 추어 가해 흉기는 불규칙한 모양(머리+자루의 2중 구조)을 갖는 매우 강력한 둔기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신사동과 구기 동 두 사건의 피해자 중, 각각 한명에게서는 손가락 배면과 왼쪽 목에 예기손상이 추가되어 있었다(Fig. 4A, B). 또한 두 번째 현장에서의 피해자 중에는 35세인 남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의 머리에는 앞선 둔기에 의한 가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 운 두피의 선상 열창 및 두개골 골절이 확인되었다(Fig. 5).

Salfati 등의 보고[6]에서, 흉기사용과 손상 유형의 관점에 서 볼 때, 행동일관성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범죄자의 약 1/3에서 행동일관성이 관찰되었으 며, 연쇄범죄의 수행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이러한 행동 일관성은 유사하게 유지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상 호작용이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관점 에서 볼 때, 본 건 일련의 살인행각에 있어서, 살해의 주된 흉 기가 해머 종류라는 점에 있어서 범행수법을 통한 동일범의 유추가 가능해지고, 머리의 선상 열창은 그 밖에 다른 흉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장의 사망자 중

유일한 젊은 남자라는 점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의 필요성, 즉 상황적 변수에 의 해 흉기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8명의 사망 자에 있어서, 둔기에 의한 손상은 머리와 가슴에 집중되어 있 으며, 대개의 경우 머리의 손상이 치명상이 되었고, 그렇다면 가슴의 손상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가해진 손상일 것이 란 추론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두 명의 사망자에게서 확인된 예기손상의 행동분석적 함의는 위협 목적의 겨눔이나 위협 손상 혹은 방어손상일 가능성이 추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의문에 대한 답이 필요해진다. 예기를 가진 가해자 가 굳이 무거운 둔기를 가지고 힘써 내려쳐서 사람을 살해해 야할 이유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의문이다. 살해의 수 단으로서 왜 예기보다는 둔기를 선호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결국 가해자의 성격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범인은 강한 완력을 가진 민첩한 자로서, 가학적 공 격성을 가졌으리란 추정이다. 예기는 호신용 내지 위협용으 로 소지한 것이라면, 둔기는 살상용으로 소지하였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그 둔기는 소지하기 적당한 크기 여야 한다는 추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명의 범인이 둘 이 상의 흉기를 이용하여 한 현장에서 다수를 살해하였다는 결 론은 너무 성급한 것이거나, 오류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관 하여는 현장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검토가 필요해진다.

범인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4건의 현장에서의 8명의 살인이 진정 연쇄살인인지, 살해의 흉기가 해머인지, 살해의 동기는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였다. 다만, 손상의 해석을 통해, 살 해의 주된 흉기는 둔기라는 점과, 불규칙한 모양(머리+자루 의 2중 구조)을 갖는 강력한 둔기일 것이라는 추정에는 도달 되었다. 그러나 신사동과 구기동 사건의 피해자 중, 각각 한 명에게서 관찰된 목과 손가락의 예기손상은 연쇄살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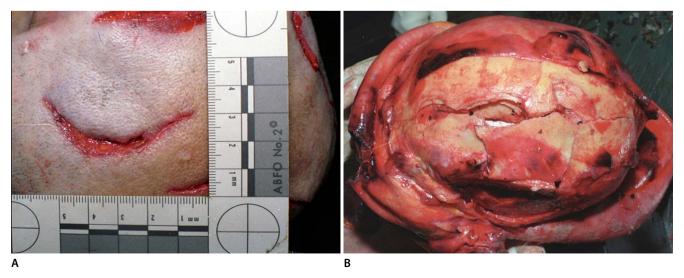


Fig. 3. (A) Semicircular laceration on the scalp of the victim. (B) The margin of the skull fracture shows stepped depression.





٦

**Fig. 4.** Sharp force injury on the right middle finger (**A**) and left side of the neck (**B**).

동일범 혹은 단독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한 명의 범인이 같은 현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흉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행동증거분석에서 간단치 않은 난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 번째 사건인 구기동 현장에서는 3명의 피해자 중에 35세인 남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해머 종류의 둔기에 의한 가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손상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분석은 매우복잡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까지도 35세 남성의 머리 손상을 야기한 흉기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자료가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 3.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손상 해석과 진술 분석

42세인 택시 기사가 어느 해 8월 새벽 무렵, 한 소도시의 오 거리 노상에서 흉기에 찔려 차량 무전기로 동료 기사에게 "xx 오거리 강도야"라고 말하여 동료가 현장에 도착,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우측 안면부 자창 1개소, 우측 흉부 자창 5개소, 우측 상완 견갑부 6개소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다는 것이 사건의 최초 개요였다. 이 사건에서 처음에는 목격자로 조사를 받던 다방배달부인 10대 소년이 어느 시점에선가용의자로 조사를 받다가 급기야 살인범으로 기소되었다.

이후 바뀐 개요에 따르면, 각각 오토바이와 택시를 운행 중 이던 두 사람은 노상에서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로부터 욕설



**Fig. 5.** Linear scalp laceration with comminuted skull fracture and exposure of ruptured brain.

을 듣게 된 가해자가 택시의 앞쪽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가 가 왜 욕설을 하느냐고 대들면서 멱살을 잡았는데,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의 사물함에 보관중인 식칼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를 찔렀다는 것이다. 살인범으로 기소된 소년은 유죄판결을 받고 10년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에 자신은 진범이 아니었노라 주장하다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부검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의 손상을 정리하면, 가슴과 우 측 어깨에 자창 및 자절창 8개소가 확인되었고, 그 창연의 길 이는 3-7.3 cm의 범위에 있었다(Fig. 6). 그중 가슴의 자창 은 후방을 향하여 수평으로 자입되어, 그중 윗쪽의 자창은 제 2-3늑간을 지나 우폐 상엽을 관통하며 심낭에 도달되었고, 아래쪽의 자창은 제2-3늑간을 지나 우폐 상엽과 우폐 중엽에 자입되었다. 오른쪽 뺨 부위에 자창이 1개소 확인되었고, 창 연의 길이는 약 2.8 cm이었다(Fig. 6). 또한 우측 어깨와 우 측 겨드랑이, 우측 손가락 배면에 각각 예기손상이 관찰되었 고, 그중 손가락의 절창은 방어손상으로 해석되었다. 그밖에 도 우측 옆구리에 2개소의 절창이 확인되었고, 이는 진료기록 부에 비추어 흉관삽관술흔으로 해석되었다.

행동증거분석의 관점에서 본 건 손상을 해석할 때, 피해자 의 오른쪽 어깨를 중심으로 한 손상들은 택시 뒷좌석에서 가 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얼굴 오른쪽의 자창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손상일 것이고, 우측 손가락 배면의 절창은 방어손상일 것으로 해석한다면, 가해 동기의 가장 합 리적인 추론은 택시강도 상황일 것이다.

판결문(2013재노3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가 해자의 진술은 수차례 번복되고 있다. (1) 1회 신문에서는 "택 시 밖에 서 있는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칼로 찌르자 피해자 가 운전석으로 도망갔고,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들어가 피해 자의 우측 어깨, 옆구리, 안면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였으 나, (2) 2회 신문에서는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우 측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가, 피 고인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고 번복하고, (3) 현장검증에서는 "오토바이에서 칼을 꺼냈는데,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키려고 하여 택시 뒷좌석에 타 가슴과 어깨 부위를 찔렀다"고 다시 번복하였다.



Fig. 6. Multiple stab wounds around the right shoulder and a stab on the right cheek of the victim.

최초 사건개요에서는 '강도'라는 피해자 증언이 있었으나, 자백된 범행 내용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 가 나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증언과 가해자의 자백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보이고, 손상 에 대한 행동증거분석 관점에서의 해석과도 괴리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공간적 장 소에 대한 진술이, (1) '조수석으로 들어가', (2) '운전석 뒷문 을 열고 들어가', (3) '택시 뒷좌석에 타고' 등으로 바뀌고 있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치 부검에서 확인된 손 상의 내용에 진술 내용을 일치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 4. 만삭 임부 욕조 사망사건의 사인과 용의자 진술 분석

영어유치원 교사이며, 임신 36주인 28세 여성이 자신의 아파 트 안방 화장실 욕조에 옷을 입은 채 양 다리를 걸치고 사망 해 있는 것이 남편에 의해 발견되었다. 옷은 실내복을 입은 상태였고 욕조 내에 물은 없었다. 드러누운 자세로 상체는 욕 조 안에, 엉덩이는 욕조 턱에 걸쳐 있었고, 다리는 욕조 바깥 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남편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4 년차이며, 사건 전날 전문의 시험을 치른 상태였다. 그는 16 시 30분경 아내(변사자)와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한 후 17시 40분경 함께 귀가하였고, 귀가 이후 집에서 다음날 새벽 3시 경까지 컴퓨터로 게임 등을 하였으며, 아침 7시경 전문의 2차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갔다. 그러다가 16시 50 분경 장모에게서 "딸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으니, 빨 리 집에 가 보라"는 전화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17시 10분경 아내의 사망을 발견하였다.

부검결과, 사인은 목눌림사(액사)로 판단되었고, 전문의 시 험과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던 남편이 부부싸 움 끝에 임신 중인 아내의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 다. 판결문(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에 따 르면, (1) 목 부위의 피부까짐, (2) 오른 목빗근 근육속출혈 및 오른 턱뼈각 주변의 피부밑 물렁조직층 출혈, (3) 기도점막 출혈, (4) 결막하점상출혈, (5) 뒤통수 부위 외부 상처와 내부 출혈, (6) 유방실질출혈, (7) 피해자의 얼굴에 난 여러 상처와 멍, (8) 입술 점막의 멍, 팔·다리 등에 있는 여러 곳의 멍, (9) 피해자 오른 눈 부위의 혈흔 등이 부검을 통해 확인되었다 하 였고, (10) 피고인의 이마, 팔, 등, 어깨 부위에서 발견된 방어 흔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상처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사인을 목 눌림사(액사)로 인정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응시하였 던 전문의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어 그 합격 여부나 수도권에 서 군의관 근무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평소 컴 퓨터 게임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아내인 피해자와 다툴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이 그러한 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 을 졸라 살해할 만한 동기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서 게임에 중독된 피고인이 전문의 1차 시험을 망친 뒤 군입 대 문제 등을 놓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살인행위는 대인간 갈등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해소책의 하나이다. 누군가에 의해 분노가 촉발되면, 이것이 폭력적 행 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분노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신체적 공격이 즉각 동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는 상대방을 위협하여 유발행동을 단념시킴으로써 극단적인 폭력적 대립의 값비싼 대가를 피하고자 하는 통제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부부관계를 포함한 이성간의 갈등이나 대 립에 있어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 고, 이러한 폭력이 반드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친밀관계에서의 폭력은 남성성을 남용하는 우발현상 (epiphenomenon)으로 볼 수 있다[7]. 그런 폭력행위 중에 서도 경부압박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무력과 통제의 상징적 인 수단의 하나이고, 그중 가장 흔한 형태가 손으로 경부를 압박하는 것이다[8].

본 건 사망자의 사인은 손에 의한 경부압박, 즉 목눌림사 (액사)이었고,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서 가장 흔히 동원되는 수단에 의한 죽음이며, 부부간에 폭력이 발생한 상 황이 전문의시험과 게임중독 등과 관련한 것이라면, 순간적 인 분노가 극단적인 결과의 유발 요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충 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획적인 살인이라 기보다는 전문의시험 불합격 가능성으로 인해 예민한 상태에 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 부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부검감정서의 사인은 목눌림사(액사)였으나, 부검결과는 남편이 범인임을 지목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행위에 의해 살해된 것임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피고 측이 주장 하는 사인은 사고성 질식사였다. 그렇다면, 공신력 있는 검시 기관이 제시한 사인을 애써 부정하는 이유에 대한 추론이 필 요해진다. 그것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면서도, 왜 진범을 잡 아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되물음에 서 시작되어야 한다. 피고 측에서의 가장 합리적인 자기방어 혹은 진실주장은 "그렇다면 범인을 잡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만삭의 아내가 욕조에서 사망한 모습을 발견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순간적인 어지러움에 중심 을 잃고 넘어져 이상 자세에 이르러 질식사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면, 검시기관의 사인을 수용하고 범인을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일 것이 라 생각된다.

사인에 대한 다툼이 법정에서도 이루어졌고, 법의의사가 사인을 제시하였다고 해서 마땅히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인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남편의 유 무죄를 다투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 부검을 통해 제시하는 검시전문가의 사인을 부정하면서 시체 가 발견된 결과적 자세에만 근거하는 사인인 이상자세성 질 식사를 피고 측이 고집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법의 의사가 제시한 사인은 피해자가 살해된 것임을 주장하는 것일 뿐, 범인이 남편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5. 하천부지 공터 탄화시체와 돌맹이 밑의 지폐

어느 해 봄 오후 무렵, 강변 뚝방 아래 하천부지에서 왼쪽 발 목 부위가 골절된 상태로 불에 탄 시체가 발견되었고, 수사관 의 의견에 따르면, 발견 현장이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한적한 곳으로서, 교통사고 후 유기된 시체로 의심된다고 하였다. 왼 쪽 하퇴부의 골절 때문에 교통사고를 추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인화물을 끼얹고 불에 태운 것이 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부검결과, 사인은 화재사였고, 하퇴부의 골절부에 서는 생활반응으로 볼만한 출혈이 확인되지 않아 교통사고 후 유기된 후 불에 태워졌을 것이란 현장의 판단은 잘못이었 음이 밝혀졌다. 더욱이 부검을 통해 추가 확인된 담낭절제술 흔적과 자궁내막의 조직학적 소견, 백발의 머리카락, 치아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변사자는 고령의 노인으로 추정되었다. 이 어 현장소견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인화물을 담았을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통의 뚜껑과 라이터 잔해가 확인되었고, 특 이한 점은 지폐 몇 장이 작은 돌에 눌린 채 발견된 것이었다 (Fig. 7).

이후 경찰의 추가조사를 통해 사망자의 신원이 특정되었 고, 변사자는 70대의 노인으로 부모부양 문제와 경제적인 곤 란으로 인한 가족 갈등으로 가출 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정



Fig. 7. Several pieces of banknote weighed down by a stone (inset: magnification of banknote).

황이 확인되었다. 인화물을 담았을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통의 뚜껑과 라이터 잔해, 그리고 현장의 지폐는 이러한 맥락 을 드러내는 행동증거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골절 부위에 생활반응이 없고, 사인이 화재사라는 부검소견에 근거할 때, 플라스틱통과 라이터 잔해, 그리고 돌맹이에 눌린 지폐는 교 통사고 후 유기된 시체보다는 자살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 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돌맹이에 눌린 지폐 몇 장은 죽 음이 경제적인 곤란과 관련된 것임을 반영하는 행동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 6. 시반의 위치와 진술과 용의자 진술

변사자(40세, 여)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로, 어느 해 1월 오후 무렵 같은 회사 팀장(47세)을 만나 당일 저녁, 지인의 아 파트에서 함께 맥주를 마신 후 성교를 한 사실이 있는데, 사 흘 후 오후 무렵, 같은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되었다. 변사자는 쭈그려 앉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몸 앞쪽 에는 시반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등에 시반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시체 발견 순간부터 죽음의 원인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부검결과, 이마와 오른 눈 주위의 피하출혈, 후두부의 두피 하 출혈, 입 주위의 미세한 표피박탈, 좌측 골반 앞부위 및 아 랫배의 다발성 표피박탈, 우측 위팔과 아래팔의 다발성 피하 출혈, 양측 손목의 표피박탈, 좌측 넓적다리와 종아리 뒷면 및 우측 종아리의 다발성 피하출혈, 후경부의 피하출혈, 양측 골반 앞부위의 피하출혈, 오른팔과 양측 하지의 피하출혈이 확인되었고, 앞목, 머리뼈, 뇌에서는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 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2%였다. 부검감정서는 사인은 불명(unknown)이나, 비구폐색성 질식사의 가능성이 고려되 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용의자 심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의를 벗 기고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상태로 1회 성교를 하였고, 당시 약간의 반항을 하여 실랑이가 있었으나 이내 응하였으며, 성 교 후 "집에 가자" 하였으나 "먼저 가라"고 대답하였다고 하 였다. 이틀 후 작은방에서 사망을 발견하였고, 누운 자세였으 며, 하의는 탈의하고, 무스탕과 녹색티를 입고 있었다고 하였 다. 이어 사망자의 휴대폰을 인근 하천에 버리고 돌아와 팬티 와 바지를 입힌 후 어깨부위를 잡고 보일러실로 시체를 옮겼 다고 하였다. 시신을 보일러실로 옮긴 이유에 대한 수사관의 추궁에 "다른 사람이 볼까봐 무스탕으로 덮은 것이며 양심의 가책도 느꼈다."다고 대답하였다. 성교를 거부하여 강제로 넘 어뜨렸고,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입을 막았으며, 10-20 초 가량 입을 막고 있으니까 조용하기에 술에 떨어졌나 보다 하고 똑바로 눕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 며, 성교를 마친 후에도 가만히 누워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0-20초를 막는 것으로는 사람이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왜 그래 왜 그래 하 면서 소리를 막지르기에 입을 막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 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일 뿐, "(입을 틀어막은) 시간 은 솔직히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행동증거분석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성교 후 "집에 가자" 하였으나 "먼저 가라"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진술은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는 기대 섞인 바람을 진술한 것이고, 시체를 보일러실로 옮기고 외투로 덮는 행위는 시체 를 은닉하고자 하는 동기와 함께, 양심의 가책을 무의식적으 로 드러내는 행위, 즉 취소행위(undoing)임을 시사해준다. 또한 성행위 과정에서 강제적 수단이 동원되었음을 인정하 고, 피해자의 소리지름을 막기 위해 오른손으로 입을 막았다 는 진술도 이어진다. 그 속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 성행위 가 이루어졌음에 대한 자백이 들어 있고, 부검을 통해 추정된 사인에 비추어, 입을 틀어막는 행위가 살해의 수단이 되고 말 았던 것이나, 그 행위의 실제적인 동기는 피해자의 언어적 반 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된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시반이란 사망의 경과시간과 사망 당시의 체위를 반영해 주는 시체소견의 하나이다. 이 사건에서는 시반의 출현 위치 를 통해 시체 발견자에 대한 혐의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부 검을 통해서도 '사인은 불명이나 비구폐쇄성 질식사의 가능 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에만 머물러, 사인을 단정하기 도 쉽지 않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부검에서 확인된 여러 외 상들은 이 죽음이 발견자의 진술과는 달리 단순히 성교 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입 주 위의 미세한 표피박탈은 비구폐쇄로 인한 질식사의 가능성 을 시사하고, 후두부의 두피하출혈은 넘어뜨리거나 혹은 비 구부를 압박하면서 머리를 찧어 누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이며, 그밖에 전신의 여러 손상들은 상당한 물리적 외력이 가 해졌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시반의 위 치와 손상의 해석에 근거하여 용의자를 심문함으로써, 강제 적인 성행위의 자백과 소리지르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았다는 자백, 그리고 시체를 보일러실로 옮긴 이유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의도하지 않은 죽임에 대한 후회 와 가책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 7. 엽총 오발과 용의자 심문

수렵 동호회원인 두 명의 엽사가 야산에서 수렵을 마치고 일 행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와서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 실 탄이 장전된 엽총을 총구가 자신 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차량 뒷좌석에 싣던 중, 총기가 오발되어 한 명이 복부에 1회 총탄 을 맞고 차량이 주차된 바로 아래 논(높이 약 2 m)으로 추락 하여 사망하였다. 목격자인 생존자는 사망자의 총이 오발된

것이고, 사망자가 자신의 총을 차량 뒷좌석에 싣다 발포된 것 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포함하여 사망의 정황에 대한 정보를 사인과 함께 부검을 통해 확보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발포된 총은 사망자의 엽총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부검결과, 사인은 복부총창이었고(Fig. 8), 총창은 발뒤꿈 치로부터 96 cm 높이에 위치하며, 사입 방향은 변사자의 신 체 전면을 기준으로 좌하방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참고사항에 언급하기를, 복부총창의 높이와 사입 방 향에 대한 부검소견을 근거로, '총기 격발 당시 총기와 피해 자의 공간적 위치관계(Fig. 9) 및 그 상황에 대한 관계자의 진 술을 청취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달고, 이러한 부검소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발포 상황에 대한 납득할만한 진술이 확보될 때까지 심문이 계속되어야 함을 알렸다. 그러 던 중에 허언탐지검사를 위해 동행중, 사망자가 자기 총을 뒷 좌석에 싣고 있던 중, 먼저 총을 뒷좌석에 실은 자신(목격자)이 "차량문을 닫다 격발되었다."는 자백을 얻어내게 되었다.

부검을 통해 엽총 오발의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란 불가 능한 일이라 판단되나, 이러한 상황에서의 해결책은 부검을 통해 확보한 총창의 특징을 놓고, 목격자의 진술을 분석하면 서 그 진술이 부검소견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라 판 단하였다. 차량의 뒷좌석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뒷문을 열고 총기를 좌석에 올려두는 상황에서의 인체의 행동반경을 적용 하여, 어떤 자세라야 부검소견을 충족시키는 총창을 입게 될 것인지를 격발 당시의 사망자의 자세 등과 비교하고 검토함 으로써 목격자의 진술이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인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 8. 주차장 내 교통사고 사망과 사고 상황에 대한 진술번복. 그리고 고의성의 입증

대도시 인근의 한 온천 리조트 주차장에서 차량 관련 사고로 운전자의 처가 사망한 사건이다. 온천욕을 마친 부부가 귀가 하기 위해 주차해 둔 승용차량을 후진하던 중, 조수석 앞 문 짝으로 처를 충격하였고, 119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 송하였으나 응급실 도착 시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임상 의사의 검안을 거쳐 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늑골골 절(추정)과 폐손상(추정)에 이은 급성호흡부전(추정)으로 검 안서가 발급되었고, 시체는 매장되었다. 매장 수일 후 거액 의 보험이 가입된 죽음임을 확인한 보험회사에서 부검의 필 요성을 경찰에 제보하여, 법원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아 파묘 (excavating), 부검하게 되었다.

부검감정서는 사인을 흉부손상으로 제시하면서, 그 설명에 있어, 교통기관을 포함하는 매우 강력한 둔력에 의한 손상의 양태에 배치되지 않으나 사건개요상에 제시된 후진 차량의 문짝에 충격, 도로바닥에 넘어져 사망하였다는 정황에 대해 서는 충분한 수사상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하였다. 그러 한 확인이 필요한 근거로서, 노면에 서있던 피해자를 문짝으 로 충격, 사망을 초래할만한 흉부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노면 등에의 전도에 의한 동반손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사망의 원인이 된 손상이 몸통에만 국한되어 있고, 양측 후방 늑골과 전방늑골이 골절된 소견은 차량 등의 구조물에 몸통 이 끼이면서 초래된 "압박" 혹은 "충격-압박"에 의한 손상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Fig. 10).

부검감정인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손상의 해석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 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건 죽음의 원인이 된 손상은 남편이 진술한 사고정황에 의해서는 그 발생 가능성



Fig. 8. An entrance wound on the abdomen by shotgun.



Fig. 9. Two shotguns in the rear seat area of a vehicle.



Fig. 10. A reconstruction of a car crash based on police report.

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압박 혹은 충격-압박"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에 관한 운전자의 납득할만 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고의 사고의 가능성이 의심되 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결국 이 죽음은 일상의 교통사고 로 종결되었다.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단이나 증거를 확 보할 수 없었고, 더구나 운전자는 사망자의 남편으로서, 불의 의 사고로 처를 잃은 유족의 지위에 있기에, 특별한 물증도 없이 그를 용의자로 가정하고 강도 높은 심문을 하는 것이 결 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수개월 후, 이 사 건의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사고 운전자의 진술이 번복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차량이 급발진 후진하면서, 아내가 차에 서 추락하였고, 뒤쪽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히고 나서 정 차되었다'에서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차밖에 나가는 순 간, 차에 탄줄 알고 출발해서 사고가 났다'로 번복되어 있었 던 것이다. 사람의 기억은 종종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기에,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반인이건 용의자이건 진술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운전자의 진술이 바뀐 사실에 지나치게 대응하며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의심의 범위를 넓 힐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처가 사망한 교통 사고를 유발한 남편의 입장에서 그 사고 상황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을 야기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행동증거분석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진술의 번복은 그 자체로 서 이 사고가 계획된 것임을 의심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 고 찰

지문이나 유전자형 같은 증거들이 어떤 범죄에 있어 그 행위 자를 특정하는 신뢰할만한 수단이 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 이나, 특별한 물증이나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에 서는, 행동증거를 통해 범행의 동기나 살인범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시도가 수사실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검안과 부검을 통한 사인의 법의학적 조사는 현장조사 와 법과학적 분석결과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인데, 증거의 법 과학적 분석이 항상 즉각적인 결과를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현장에서의 물증의 확보가 늘 성공적일 수만은 없는 것이므로, 수사의 여러 단계에서 시의적절하게 행동증 거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물증의 확보가 충분치 못하거나, 혹 은 그 실험실적 분석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수사관에 게 도움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9].

범죄행위의 분석을 통해서 범죄자의 행동특성과 성격 을 파악하는 수사기법인 범죄인상분석은 전통적으로 브레 인스토밍(brainstorming)과 직관, 경험적 추론(educated guesswork)을 통해 훈련되어 왔고, 그 분야의 전문성은 오 랜 동안의 축적된 지혜와 광범위한 현장 경험, 수많은 사례에 대한 경험(familarity)의 산물이다[2]. 같은 맥락에서 행동증 거분석이 보다 논리적인 결론을 통해서 수사실무에 적용되고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사건에 대한 실제적 분석과 적 용,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자료를 모은 경험 적 차원에서의 연구성과와 그 축적이 필요하다.

범죄연관성분석(linkage analysis)의 중심 전제는 범죄행 동의 일관성(consistency)과 가변성(variability)이다. 범죄 자는 일련의 범죄 행각에서 유사한 행동을 보일 여지가 높고, 이를 행동일관성이라 하며,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서로 다 른 범죄자는 범죄 상황에서 서로 달리 행동하거나 혹은 범죄 자 사이에는 그 범죄 행동에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10].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다른 수사기법과의 조 화 속에서 기능하고 검토되어야 할 수단의 하나임을 유념해 야 한다. 행동분석은 상대적으로 드문 폭력적 인간행동에 대 한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고, 또한 행동이라는 것은 다양한 변 수(variation)에 종속되는 것이기에, 비합리적으로 높은 기대 를 가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9].

범죄인상 분석에서 주요 분석대상 중의 하나인 범행수법 (modus operandi)을 살펴보면, 범행수법이란 그 자체가 학 습된 행동이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서의 다양한 환경적 상황 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11]. 61명의 연 쇄살인범의 범죄현장 행동을 볼 때, 약 60%에서 범행수법 에서의 합리적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범행수법 의 특징을 활용한 연쇄범죄의 연관성 분석에는 일정한 제약 이 불가피해진다[12]. 살인 행위는 시간 경과에 따라 발전하 는 심리적 특성과 상황적 속성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는 살인 행위를 조사할 때, 살인범죄를 시간경과에 따라 변 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특정 살인 행위의 심리적 특성과 상황적 속성이라는 양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어떤 범죄 시나리오로부터 추

출된 가설을 범죄 현장에서 얻어낸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어 떤 가설이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피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과잉살상 (overkill)을 행한 범죄자라면, 이런 정보들을 조합함으로써, 가해자는 그의 분노를 피해자에게 표출했고, 그렇다면 가해 자는 희생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지 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피해자가 안면손상을 입었을 가 능성이 더 커지므로, 이와 같은 주변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3].

일련의 범죄행위에 걸쳐서 범죄자의 행동 양상이 유사하게 유지된다는 행동일관성 이론은 연쇄범죄에서 있어서 한 범죄 자의 범행 패턴을 파악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유사한 범행을 하는 다른 범죄자를 구별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14]. Bennell과 Canter[10]는 연쇄 침입절도범죄를 조사하 여 범죄행동과 범죄를 연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범죄 간의 지리적 거리도 안정되고 일관된 행동의 하나라고 주장 하였다. 이렇듯 일련의 범죄행각에 걸친 행동일관성을 지지 하는 연구보고도 있지만, 애석하게도 행동일관성 가설을 지 지하는 증거는 매우 제한적이다. Alison 등[15]은 일관성과 가변성 가설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행동일관성에 대한 몇몇 연구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경험적 지지 사례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범죄행동에 있어서의 행동 비일관성의 주된 원인에 대한 논의는 Salfati에 의해 제기되었다[16,17]. Salfati[16,17]는 행 동이란 상황 의존적이며,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살인행위란 본질적으로 피해자와 가 해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호작용 중에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살인행위의 내용을 결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달리 말하면, 피해자의 행동이 가해자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 자에 대한 통제 유지가 매우 중요한 가해자에 있어, 피해자 의 저항이 격렬한 경우라면, 가해자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 던 속박(restraints)을 가하지 않고는 살인행위를 감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속박 행위의 행동적 발현 은 다시금 상황 의존적이 된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 재 갈물리기가 적용될 것이고,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하면 결박 (binding)이 시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쇄살인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살인 행위 중에 가하는 폭력적 행위 에 있어 비교적 행동일관성을 견지한다는 보고가 있고[14], 또한 범죄자의 직업과 훼손의 방법 및 도구의 선택 사이에는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연관성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어[18], 범죄행위의 행동일관성 여부를 이분법적 관점으로만 적용하 거나 배제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되지 못하리라 생각된다.

행동증거분석의 관점에서는 폭력 행동을 도구적 (instrumental) 폭력과 표현적(expressive) 폭력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19], 표현적 폭력의 동기는 폭력행동 그 자 체인데 반해, 도구적 폭력은 행위자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수단이 된다[20]. 이와 같이 범죄행동과 범죄현장의 특징을 분석하여 범인의 성격특징 혹은 범행의 동기를 시사 해주는 단서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21], 그 영역을 더 확장하 여 피해자 면담의 과정에서 얻어진 가해자의 언어적, 성적, 신체적 행동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가해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러한 욕구를 지닌 개인의 성격적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22]. 한발 더 나 아가, 범죄자의 진술에 담긴 가해상황과 부검을 통해 밝혀진 손상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 는 것도 법의학적 소견을 행동증거분석과 연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5].

전문프로파일러가 일반인(nonprofiler)에 비해 범죄현장 의 상세소견으로부터 범죄자의 성격특성을 더 정확히 추론하 고 범죄자를 특정하는 데 과연 더 정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 을 수 있다. 그에 관한 연구결과, 전문프로파일러는 살인 사 건에서보다는 성범죄 사건에서 더 정확하게 용의자를 기술할 수 있었고, 그 까닭을 추적해 보면, 성범죄에 있어서는 범죄 상황에 대한 이야기(narrative)가 담긴 피해자 진술이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반면에 타살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진 술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3]. 이 보고가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 범죄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바로 관련 전문가 사이의 관심과 소통과 협업의 제도적 강화를 요구한다. 여기 에는 부검을 담당하는 법의의사의 현장 접근 권한과 관계자 진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가능한 한 상세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법의학 적 소견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해석과 다양한 각도에서의 검토를 통해 수사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동증거분석에 관한 법의학의 역할 을 평가하기 위한, 40건의 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후향적 분 석 결과를 보면, 검시소견은 행동증거분석의 성패에 대한 충 분한 기여를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서 는 우선, 손상 양상의 단순한 기술만으로는 사건의 재구성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 손상의 내용이 조악 하게 기록되거나 심지어는 기록의 누락 혹은 손상의 해석이 잘못된 경우가 있으며, 셋째, 사건의 배경에 대한 정보가 없 이 손상의 해석이 이루어진 경우를 들고 있다[1].

범죄인상분석으로부터 과학적 성과를 생산하고자 하는 필 요와 기대가 있다면, 그 첫 단계는 그 성과에 관심 있는 기관 들 사이에 더 확고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24]. 손상의 해석을 통한 사인의 규명과 사망의 종류 판단을 망라하여, 죽 음에 대한 법의학적 판단이라는 것은 현장의 상황과 사망자 의 주변 정황, 과거력 등 많은 자원을 종합하여야 하는 것이

고, 자타살의 감별도 시체소견에 대한 법의학적 해석을 통해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은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 가 완결된 후라야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처럼[25], 행동증거의 분석 또한 그 진위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의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결국 행동증거분석이라는 수사상의 노력도 범죄인상분석과 마찬가지로 수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당하고, 진범을 수색하기 위한 범위를 좁혀주며, 사건 수사 에 필요한 수용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만 신중 하게 활용되어야 한다[26].

결론적으로, 행동증거분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과 관계기관들이 체계적인 협업의 틀을 마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물론 과거에 이미 종결된 사건까지도 범위를 넓 혀 공동으로 분석하고 사건 결과의 의미와 가치를 재검토함 으로써, 경험적 연구성과를 축척하고 실무적인 적용 가능성 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앞 으로 행동증거분석은 일반 대중의 환상을 충족하는 소설 같 은 수사기법이 아니라, 수사실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 능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학적인 수사기 법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Acknowledgements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colleague pathologists and investigators who were involved in some cases which I analysed in this paper.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Chosun University, 2015.

#### References

- 1. Schroer J, Trautmann K, Dern H, et al. The significance of medicolegal findings for behavioural analysis in unsolved homicide cases. Leg Med (Tokyo) 2003;5 Suppl 1:S243-6.
- 2. Douglas JE, Ressler RK, Burgess AW, et al. Criminal profiling from crime scene analysis. Behav Sci Law 1986;4:401-21.
- 3. Turvey BE.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In: Turvey BE, ed.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4th ed. San Diego: Elsevier; 2012. p. 121-40.
- 4. Turvey BE. A history of criminal profiling. In: Turvey BE, ed.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4th ed. San Diego: Elsevier; 2012. p. 3-40.
- 5. Kim YS, Park MS. Linking wound interpreta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Korean J Leg Med 2016;40:1-7.
- 6. Salfati CG, Horning AM, Sorochinski M, et al. South African serial homicide: consistency in victim types and crime scene actions

- across series. J Investig Psychol Offender Profil 2015;12:83-106.
- 7. Daly M, Wilson M. Crime and conflict: homicide in evolutionary psychological perspective. Crime Justice 1997;22:51-100.
- 8. Strack GB, McClane GE, Hawley D. A review of 300 attempted strangulation cases. Part I: criminal legal issues. J Emerg Med 2001:21:303-9.
- 9. Beasley JO 2nd. Serial murder in America: case studies of seven offenders. Behav Sci Law 2004;22:395-414.
- 10. Bennell C, Canter DV. Linking commercial burglaries by modus operandi: tests using regression and ROC analysis. Sci Justice 2002;42:153-64.
- 11. Douglas JE, Munn C. Violent crime scene analysis: Modus operandi, signature and staging. FBI Law Enforc Bull 1992;61:1-10.
- 12. Harbort S, Mokros A. Serial murderers in Germany from 1945 to 1995: a descriptive study. Homicide Stud 2001;5:311-34.
- 13. Crabbe A, Decoene S, Vertommen H. Profiling homicide offenders: a review of assumptions and theories. Aggress Violent Behav 2008;13:88-106.
- 14. Salfati CG, Bateman AL. Serial homicide: an ivestigation of behavioural consistency. J Investig Psychol Offender Profil 2005;2:121-44.
- 15. Alison L. Bennell C. Mokros A. et al. The personality paradox in offender profiling: a theoretical review of the processes involved in deriving background characteristics from crime scene actions. Psychol Public Policy Law 2002;8:115-35.
- 16. Salfati CG. Offender interaction with victims in homicid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frequencies in crime scene behaviours. J Interpers Violence 2003;18:490-512.
- 17. Salfati CG. The nature of expressiveness and instrumentality in homicide: implications for offender profiling. Homicide Stud 2000;4:265-93.
- 18. Rajs J, Lundstrom M, Broberg M, et al. Criminal multilation of the human body in Sweden: a thirty-year medico-legal and forensic psychiatric study. J Forensic Sci 1998;43:563-80.
- 19. Salfati CG, Canter DV. Differentiating stranger murders: profiling offender characteristics from behavioral styles. Behav Sci Law 1999;17:391-406.
- 20. Feshbach S. The function of aggression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ve drive. Psychol Rev 1964;71:257-72.
- 21. Warren J, Reboussin R, Hazelwood RR, et al. Crime scene analysis and the escalation of violence in serial rape. Forensic Sci Int 1999;100:37-56.
- 22. Hazelwood RR, Burgess AW. An introduction to the serial rapist: research by the FBI. FBI Law Enforc Bull 1987;56:16-24.
- 23. Pinizzotto AJ, Finkel NJ. Criminal personality profiling: an outcome and process study. Law Hum Behav 1990;14:215-33.
- 24. Muller DA. Criminal profiling: real science or just wishful thinking? Homicide Stud 2000;4:234-64.
- 25. Desinan L, Mazzolo GM. Gunshot fatalities: suicide, homicide or accident? A series of 48 cases. Forensic Sci Int 2005;147 Suppl:S37-40.
- 26. Meyer CB. Criminal profiling as expert evidence? An international case law perspective. In: Kocsis RN, ed. Criminal profiling: international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otowa: Humana Press Inc.; 2007. p. 207-47.